

CONTACT



중대재해 대응센터장
김후곤

T: 02.6386.6230
E: hoogon.kim@leeko.com



변호사 이상현

T: 02.772.5918
E: sanghyun.lee@leeko.com



변호사 송현석

T: 02.772.4691
E: hyunseok.song@leeko.com



변호사 홍정연

T: 02.772.4435
E: jeongyeon.hong@leeko.com



변호사 강세영

T: 02.772.4512
E: seyoung.kang@leeko.com

공소청 출범 이후 노동청 수사 절차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1. 2026. 10. 2.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노동감독관은 입건, 송치 등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으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공소청 체제 하에서는 검사가 아닌 노동청의 지방관서장, 과장 등으로부터 내부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다만 검사는 직권 또는 노동청요청시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독자적 수사권한 하에서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노동청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였고, 고용노동부 내부 수사 규칙 및 매뉴얼 등을 제정,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사 절차상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노동청	수사 개시	사건 수사 시작(현장 방문, 자료 요구, 관련자 조사 등), 독자적판단하에 입건 가능
	(필요시) 검사 지도·조언	노동청 요청 또는 검사 직권에 따른 지도·조언 (↔ 기존: 검사 수사 지휘가 필수적) *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여전히 검사의 영장 청구 필요
	공소청 송치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
공소청	사건 검토 개시	노동청 송치 사건 검토 시작
	(필요시) 보완수사 요구	수사 미진 판단 시 노동청에 보완 수사 요구
	(필요시) 의견 청구 및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피의자·사건관계인 의견 청구, 고소인 면담 등 가능. 단, 증거능력은 없음 (↔ 기존: 직접 보완수사 가능하고 증거능력도 인정됨)
	공소제기 여부 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2. 공소청 체제하 노동 사건 수사 대응시 중요 point

첫째, 수사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이나 일반 노동 사건의 진정/고발/고소 등으로 사건이 개시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입건 등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송치할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나 자료 등에 따른 부정적 인상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충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노동청 내부 수사지휘가 가능해졌으므로, 담당 노동감독관 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지방관서장 등 지휘권자가 사건 및 당사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검사의 법적 권한은 축소되었으나 지도·조언 및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여전히 수사 과정에 관여할 수 있고, 노동청도 중대재해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사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공소청 변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공소청 체제 하에서 검사는 기존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 당사자의 입장이 검사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노동 그룹의 전문성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노동 그룹은 최근 다수의 대기업 / 주요기업 중대재해 등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고,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에서 건설공사발주자 쟁점과 관련된 리딩케이스를 이끌어 내었으며, 임금 사건 등 일반 노동 수사 사건에서도 무죄판결 및 다수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등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노동 및 중대재해 사건 수사 대응이나 기업의 체계적인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 본 뉴스레터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